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848호 2023. 8. 10.(목)

훈 령

- 사천시 훈령 제44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규정 일부개정규정 ----- 1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23-194호 정동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준공인가 고시 ----- 2
- 사천시 고시 제2023-197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 ----- 4

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23-1092호 동금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(광장: ①교통광장)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열람공고 7
- 사천시 공고 제2023-110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----- 9
- 사천시 공고 제2023-1112호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14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사천시 훈령 제449호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
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3년 8월 10일

사 천 시 장 박 동 식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규정 일부개정규정

제1조(「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의 개정) 사천시 공무원
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제5호 중 “만 8세”를 “8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규정」의 개정)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
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만70세”를 “70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사천시 고시 제2023-194호

정동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준공인가 고시

사천시 고시 제2019-260호(2019.11.22.)로 최초 시행계획 고시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2-293호(2022.12.29.)로 최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정동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 완료되어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 고시합니다.

2023년 8월 10일

사 천 시 장

1. 사업의 명칭 :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
2. 사업의 목적 :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
및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·체계적인 개발을
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
3. 사업비 : 3,286백만원(국비 70%, 지방비 30%)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4. 주요사업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분야	세 부 사 업	사 업 개 요	사업비	비고
합 계			3,286	
기초생활기반확충			2,093	
	정동권역 문화복지공간 조성	센터 신축 116.64㎡, 다목적체육공간 신축 199.82㎡	2,093	
지역경관개선			426	
	수청마을 숲 정비		49	
	예수마을 쉼터 조성		0	
	예수마을 둘레길 조성	둘레길조성 420m	374	
	권역 안내판	1식	3	
지역역량강화			214	
	교육 및 견학	1식	39	
	홍보마케팅	1식	29	
	컨설팅	1식	18	
	정보화구축 및 운영지원	1식	20	
	마을경영지원	1식	109	
부대비용			553	
				설계비, 감리비 등

5. 사업시행자 : 사천시청(도시재생과)

6.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

- 착 공 일 : 2015년 01월 01일
- 준 공 일 : 2023년 06월 30일

7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

8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재생과(☎055-831-324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사천시 고시 제2023-197호

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

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8월 10일

사 천 시 장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내용

①구분	②종류	③노선번호	④노선명	⑤위치	⑥면적	⑦기점	⑧종점	⑨주요 통과지	⑩총연장 (km)
신설	시도		시도 8호선	서포면 자혜리	9,471m ²	서포면 자혜리 313-3	서포면 자혜리 산23-20	-	0.775km
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

- 시도8호선(자혜지구) 도로 확·포장공사

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(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

- 고시일로부터 24개월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(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

- 별도첨부

5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
가. 열람기간: 고시일(사업인정일)로부터 30일간

나. 열람장소: 사천시청 도로과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붙임1-1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조서 (시도8호선)

구분	소재지	지 번	지목	면적(m ²)		소 유 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고
				공부	편입	성 명	주소	성 명	주소	권리내용	
1	서포면 자혜리	313-3	전	285	4	사천시					
2	서포면 자혜리	313-2	도	36	23	김*원	서포면 자혜리				
3	서포면 자혜리	310-3	도	7	5	류*생	서포면 자혜리				
4	서포면 자혜리	309-2	도	231	208	김*규	서포면 자혜리				
5	서포면 자혜리	514-3	도	333	333	김*문 (95/2,539)	부 산 사상구				
						김*술 (95/2,539)	부 산 영도구				
						사천시 (2,349/2539)					
6	서포면 자혜리	344-5	도	110	56	사천시					
7	서포면 자혜리	1196-12	도	8,379	471	국 (국토교통부)					
8	서포면 자혜리	353-1	도	250	250	사천시					
9	서포면 자혜리	305	도	31	31	사천시					
10	서포면 자혜리	356-12	도	565	23	국 (기획재정부)					
11	서포면 자혜리	356-5	구	1,750	147	경상남도					
12	서포면 자혜리	356-1	잡	132	132	경상남도					
13	서포면 자혜리	356-2	잡	704	704	경상남도					
14	서포면 자혜리	356-4	도	1,199	1,199	경상남도					
15	서포면 자혜리	356-3	잡	177	177	경상남도					
16	서포면 자혜리	15-1	도	986	986	경상남도					
17	서포면 자혜리	산23-9	도	2,938	2,938	경상남도					
18	서포면 자혜리	산23-20	도	27,767	20	경상남도					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구분	소재지	지 번	지목	면적(m ²)		소 유 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고
				공부	편입	성 명	주소	성 명	주소	권리내용	
19	서포면 자혜리	279-3	도	91	72	사천시					
20	서포면 자혜리	279-1	도	43	19	류*운	서포면 자혜리				
21	서포면 자혜리	282-1	도	7	7	전*금	서포면 자혜리				
22	서포면 자혜리	309-3	도	368	264	사천시					
23	서포면 자혜리	543	도	729	23	국 (농림축산식품부)					
24	서포면 자혜리	514-5	답	107	107	김*문 (95/2,539)	부 산 사상구	서포 농업 협동 조합	사천시 서포면 자구로 463	근저당	
						김*술 (95/2,539)	부 산 영도구				
						김*성 (2,349/2539)	사남면 조동길				
25	서포면 자혜리	514-4	도	8	8	김*문 (95/2,539)	부 산 사상구				
						김*술 (95/2,539)	부 산 영도구				
						사천시 (2,349/2539)					
26	서포면 자혜리	515-3	도	33	33	사천시					
27	서포면 자혜리	542	구	878	878	국 (농림축산식품부)					
28	서포면 자혜리	515-4	도	345	345	사천시					
29	서포면 자혜리	356-11	구	438	8	국 (기획재정부)					
합 계				48,927	9,471						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사천시 공고 제2023-1092호

동금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광장: ①교통광장)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열람공고

사천시 고시 제89호(2011. 07. 28.)로 최종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광장: ①교통광장)에 대하여 “동금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”을 시행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열람공고 하며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8월 10일

사 천 시 장

1. 실시계획인가 신청내용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: 사천시 동금동 143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1) 종 류: 도시계획시설(광장: ①교통광장) 사업

2) 명 칭: 동금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: 회전교차로 설치 A=7,634m²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성 명: 사천시장(도로과장)
- 2) 주 소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마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1) 착수예정일: 실시계획인가일
- 2) 준공예정일: 2024. 4. 30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■ 토지조서

연 번	위 치			지 목	대장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 유 자		비고
	시	동	지번				성 명	주 소	
1	사천	동금	143	도	114,247.4	7,634	사천시		
합 계					114,247.4	7,634			

2. 열람의 일시 및 장소

- 가. 열람기간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- 나.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: 사천시청 도시과
- 다. 관계도서는 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,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(☎055-831-3163) 또는 도로과(☎055-831-338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사천시 공고 제2023-1103호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3년 8월 10일

사 천 시 장

1. 목적

태풍 및 집중호우 시 급경사지 사면의 유실,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 등이 우려됨에 따라,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·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.

2. 주민 의견수렴 주요 내용

가. 행정예고 기간: 2023. 8. 10.~8. 30. (20일간)

나. 의견제출 기간: 2023. 8. 10.~8. 30. (20일간)

다. 공고방법: 사천시 공보,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

라. 관련근거

-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재해위험도평가 등)
-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(지역·지구등의 지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(주민의 의견청취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3. 의견제출

- 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천시청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제출기한: 2023. 8. 30. (18:00) 까지
- 다. 제출방법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055-831-6036)
- 라. 제출처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(사천시청 재난안전과)
(우편번호) 52539
- 마. 문의처: 사천시청 재난안전과 재난방재팀(☎055-831-3315)
- 바.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4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

지역명	위치	지정내용			지정 사유	관리기관	비고
		유형	등급	면적(m ²)			
망산공원	경남 사천시 선구동 216번지 일원	붕괴위험	D	7,747	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관리 및 정비로 인명 및 재산 보호	사천시	

5. 지정 후 정비계획

지역명	사업시기	소요예산(백만원)	사업 내용	비고
망산공원	2024년 이후	8,690	사면 정비 및 배수로 설치 등 L=150m, H=10~30m	

※ 사업 시기 및 소요 예산은 현장 여건과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6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- 가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(管路)의 설치,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
- 나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- 다. 옹벽·축대 및 측구(側溝) 등을 변경하는 행위
- 라.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- 마.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

7.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,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.

- 붙임
- 1. 의견제출서(서식) 1부.
 - 2.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부.
 - 3.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및 편입면적조서 1부(열람서류). 끝.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망산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사천시장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사천시 공고 제2023-1112호

「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3년 8월 10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화재취약계층에서 일반주택으로 확대하여 화재예방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함.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
- 나. 목적(안 제1조)
- 다. 지원대상 및 범위(안 제2조)
- 라. 지원신청(안 제3조)
- 마. 지원결정(안 제4조)
- 바. 협조(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 재난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 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재난안전과장)

(우편번호 : 52539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 : 831- 2176,
FAX : 831- 6036)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생 년 월 일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3 - 제 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8.

제 출 자: 재난안전과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가.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화재취약계층에서 일반주택으로 확대하여 화재 예방 효과를 증대하기 위함
- 나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
- 다.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 건의
(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-2083, 2023. 2. 22.)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
- 나. 목적(안 제1조)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다. 지원대상 및 범위(안 제2조) 지원대상을 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정하고, 화재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간이 소화용구를 추가 보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

라. 지원신청(안 제3조)

마. 지원결정(안 제4조)

바. 협조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공보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기 간: 2023. 8. 10. ~ 2023. 8. 30.(20일간)

나) 제출의견: 없음, 건

다) 반영여부: 반영 건, 미반영 건

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: 반영, 미반영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천시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 및 범위) ① 시장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
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(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)
3.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

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848호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4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5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
6. 65세 이상의 독거노인

③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간이소화용구(에어로졸식,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)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.

제3조(지원신청)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읍·면·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결정) ① 읍·면·동장은 지원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.

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.

제5조(협조) 사천시와 사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.

관 련 법 규

□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(이하 “주택용소방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

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